

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골수종

성별) 남성

(나이) 61세

직종) 반도체 제조공장 근로자

직업관련성 낮음

1. 개요

근로자는 1983년 7월 1일 □사업장에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19년 11개월간 근무 후 2003년 5월 1일에 퇴사하였다. 이 후 2003년 6월 9일에 △사업장에 반도체 조 립라인의 사업부장으로 입사하여 9년 3개월간 근무 후 2012년 9월 4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고. 다시 약 1년 후인 2013년 10월 24일에 재입사하여 1년 6개월간 근무 후 2015년 4월 21일 퇴사하여, 총 10년 9개월간 근무하였다. 근로자는 2017년 4 월 25일에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 심된다고 진단받았고, 대학병원에서 2017년 5월에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 는 반도체 공장에서 불량분석 업무 클리룸 순회 점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전리방사 선,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클린룸의 유해공기,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2019년 9월 17일 근 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.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3월 10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. 작업환경

근로자는 □사업장에서 19년 11개월간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.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A공장과 B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, 제품의 신뢰성 테스트를 주로 수행 하였다.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해외의 C공장에서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, 하 루 2시간 정도는 A, B공장과 같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. 1992년부터 2003년까 지는 다시 국내의 D공장에서 근무하여 순회점검 업무 및 매니저 업무를 수행하였다. 이후 근로자는 △사업장에서 2003년부터 2012년,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부장 으로 근무하였으며, 현장에서 직접 장비수입, 엔지니어 교육 등 셋업에 필요한 모든 활 동을 총괄하였다. 최초 3, 4년 동안은 작업자와 엔지니어 및 관리자 업무까지 총괄하 며 신입 작업자를 일일이 교육하였고, 이후로도 하루 3-4시간은 라인에서 근무하였 다. 라인에서는 2시간에 1회 120 온도의 오븐을 열어야 했는데 이때 탄내가 많이 났다 고 하였다. 다만 오븐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연결되어 24시간 가동되며, 오븐 내 온도가

I. 암질환 가. 림프조혈기계암 30 31

후속작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진 후에 오븐을 개방하므로 오븐 내의 공기 치환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.

3. 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

4.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. 의학적 소견

근로자는 2017년 4월 25일에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전산화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 후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심된다고 진단받았고,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 및 전신 양전자 단층촬영 검사, 혈청/소변 단백 전기영동검사후 2017년 5월에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다. 이후, 항암치료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(2017년 9월)을 받은 후 완전관해 상태로 추적관찰 중이다.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상 다발골수종과 관련된 질병력은 없었고, 근로자는 5남 2년 중 다섯째로 혈액암과 관련된 가족력도 없다고 진술하였다. 흡연은 하지 않았고, 음주는 주 1회, 1회에 소주 1~1.5병 정도 마신다고 하였고,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당뇨병은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이고 현재는 완치된 상태라고 하였다.

6. 고찰 및 결론

근로자는 만 61세가 되던 2017년 5월에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1983년 7월 1일 □사업장에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19년 11개월간 근무 후 2003년 5월 1일에 퇴사하였다. 이 후 2003년 6월 9일에 △사업장에 반도체 조립라인의 사업부장으로 입사하여 9년 3개월간 근무 후 2012년 9월 4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고, 다시 약 1년 후인 2013년 10월 24일에 재입사하여 1년 6개월간 근무 후 2015년 4월 21일 퇴사하였다. 2개의 반도체 공장에서 총 30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. 근로자의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, 포름알데히드, X-선, 감마선, 산화에틸렌이 제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. 근로자는 최근 자료로 판단한 결과, 반도체 공장에서 총 30년 8개월을 근무하면서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, 전리방사선과 극저주과 자기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. 따라서,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